

弘文館考

朴 永 俊

〈目 次〉

- I. 緒 論
 - II. 沿 革
 - III. 組織과 職制
 - A. 弘文館의 組織
 - B. 館員의 任命節次
 - IV. 弘文館의 機能
 - A. 政治的·行政的 機能
 - 1. 劄疏(上疏)
 - 2. 請對 및 伏閣 合辭
 - 3. 檢劄機能(處置 其他)
 - 4. 知製敎
 - 5. 議 證
 - B. 學術·文化的 機能
 - 1. 進 講
 - 2. 文臣의 勸課
 - 3. 故事考證
 - C. 圖書館的 機能
 - 1. 藏 書
 - a. 藏書의 來歷
 - b. 書籍의 蒐集과 編纂
 - c. 圖書의 貸出과 閱覽
 - 2. 弘文館刊行圖書
 - D. 其他職任
 - 1. 當直勤務(豹直)
 - 2. 進 箋
 - 3. 入侍 儀式參與 特典 其他
- V. 結 論

I. 緒 論

朝鮮王朝時代의 弘文館은 世祖 9年(1463)에 王室의 藏書機關으로서 처음으로 設置되어 隆熙 元年(1907)에 奎章閣에 併合될 때까지 400餘年間 存續하던 官司이었다. 弘文館은 成宗時代에 이르러 舊集賢殿의 職制와 機能을 繼承함으로써 그 機能과 權限이 擴大 強化되어 本來의 藏書機關 즉 圖書館的 性格 外에도 學術·文化 및 政治的 機能들을 併有하여 朝鮮王朝時代의 學術·文化 및 政治에 至大한 影響을 미친 官司이었

다. 특히 弘文館은 司憲府 및 司諫院과 더불어 三司의 하나로서 言官으로서의 重要한 役割을 擔當했었다.

그러므로 弘文館은 政治史·文化史 및 圖書館史 등 여러 學問分野에 있어서 반드시 研究되어야 할 對象이다. 弘文館志를 비롯하여 여러 文獻들에서는

「弘文館 卽古之集賢殿」¹⁾

「成廟 依集賢殿 復設弘文館於殿側」²⁾

「成廟卽位 依集賢殿 復設弘文館」³⁾

이라 하여 集賢殿制度에 의거하여 設置된 것이 바로 弘文館이라고 記述하고 있다.

包括적으로 말하여 前述한 바와 같이 弘文館은 集賢殿制度에 의거하여 設置된 集賢殿의 後身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長久한 歷史에 걸쳐 許多한 迂餘曲折을 겪으면서 存續했던 弘文館의 性格을 正確히 規定한 것이 못 된다. 그 理由는 弘文館의 成立經緯가 集賢殿의 成立經緯와 다르기 때문이다. 集賢殿은 成立 當初부터 古今의 「經籍을 蒐集, 備置하고 年少才行의 人士를 擇하여 經史를 講論케 함으로써, 王의 顧問에 備하기 위하여」⁴⁾ 設置된 官司이었다. 즉 集賢殿은 처음부터 經籍의 收藏, 經史의 講論, 그리고 王의 顧問에 對備하기 위하여 設置된 複合的 機能들을 가진 官司이었다.

이에 反하여 弘文館은 世祖 9년에 同知中樞府事 梁誠之의 建議에 따라 秘書(藏書)를 收藏하는 機關으로서 設置된 것이며, 이때부터 「貯書之所」⁵⁾ 즉 一種의 圖書館으로서 出發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弘文館은 成立 初期에는 一種의 圖書館의 役割을 擔當하던 官司였으므로 처음

1) 弘文館志 建置 第1, 沿革

2) 燃藜室記述別集 7, 弘文館

3) 慵齋叢話 卷2, 集賢殿

4) 世宗實錄 卷7, 世宗 2年 庚子 3月

5) 弘文館志 書籍 第5, 藏書

부터 集賢殿의 後身이었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後 여러번의 變遷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名實相符한 集賢殿의 後身으로 發展強化했던 것이다.

弘文館의 性格을 어떻게 規定하느냐에 따라 弘文館의 成立年代에 관한 異論이 提起되는 것이다. 즉 弘文館을 集賢殿과 같은 것이라고만 본다면, 弘文館이 集賢殿의 職制와 機能을 完全히 繼承한 때에 비로소 그것이 成立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成立年代는 成宗 10年(1479) 己亥⁶⁾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見解에 따라서는 그것을 成宗 元年(1470) 庚寅⁷⁾이라고도 볼 수 있고, 成宗 9年(1478) 戊戌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弘文館의 機能 如何에 拘碍됨이 없이 그것이 처음으로 設置된 때를 弘文館의 成立年代로 본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世祖 9年 癸未인 것이다. 그러므로 問題를 客觀적으로 嚴密하게 보는 立場에서는 弘文館의 設置年代가 世祖 9年이라는 史實을 無視할 수 없으며 萬若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各異한 見解에 따라 主張되는 弘文館의 成立年代 以前에는 弘文館이 存在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다음에 또 言及하여야 할 것은 弘文館을 集賢殿의 後身이라 하여 그 政治的인 機能을 強調하는 나머지 그것이 가졌던 餘他的 機能들을 意識적으로 度外視하려는 態度는 正當한 것이 못된다는 것이다. 弘文館은 「掌經籍·治文翰·備顧問」⁹⁾이라는 性格規定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圖書館的 機能(掌經籍)과 學術的 機能(治文翰) 그리고 政治的 機能(備顧問) 등을 俱有한 複合的 機能들의 官司이었다. 그러므로 弘文館研究에 있어 그 圖書館的인 面을 度外視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集賢殿도 「多置書籍」하고 「講論經籍」하며 王의 顧問에 備하던 官司였으므로¹⁰⁾ 그

6) 弘文館志 建置 第1. 沿革 「…十年己亥 又因大臣建白 本館改稱弘文館…」

7) 弘文館志 職官 第2. 差除 「…成宗大王元年庚寅 命置藝文館…兼帶經筵 凡文翰經筵記注等事 一如集賢殿古例」

8) 崔承熙著: 弘文館의 成立經緯(韓國史研究 5)

9) 弘文館志 建置 第1. 沿革

10) 定宗實錄 卷1, 元年己卯 3月

것도 一種의 王室圖書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弘文館을 集賢殿과 같은 것이라고만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졌던 圖書館的인 一面이 否定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一面에만 置重하지 않고 嚴格한 客觀的인 態度를 堅持하면서 弘文館이 保有하였던 多樣한 複合的인 機能들을 高루 考察 論述함으로써 歷史的 存在인 弘文館의 全貌를 浮刻 再現시켜 보려는 것이 小論의 意圖인 것이다.

II. 成立과 變遷過程

弘文館은 唐나라에서 그 淵源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唐 高祖 武德 4年(618)에 처음으로 門下省 밑에 修文館을 設置하고 學士·直學士를 두었으며 同 9年(623)에 이것을 弘文館이라고 改稱하였다. 弘文館은 元來 四部(經史子集)圖書를 收藏하던 곳인데, 學士는 定員이 없고 圖書를 詳細히 校正하여 生徒들에게 教授하는 일을 管掌하였다.¹⁾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文翰之任(學術機關)의 沿革을 살펴보면, 新羅는 詳文師를 두었다가 聖德王 13년에 通文博士라고 改稱하였고, 景德王은 이것을 다시 翰林이라고 改稱하였으며, 그 後에 學士를 두었다.²⁾ 高句麗에는 太學博士와 典書客이 있었고 百濟에는 博士가 있었다. 弓裔의 泰封에는 元鳳省이 設置되었었다.³⁾

高麗太祖 또한 元鳳省을 設置하고 制撰과 詞命을 管掌케 하다가 後에 이것을 學士院으로 改稱하고 翰林學士를 두었으며, 이것이 顯宗에 이르러 翰林院으로 改稱되었다. 그 後 이러한 諸官殿과 學士 등은 分合廢止 更置 또는 名稱이 變更되는등 複雜한 變容을 겪으면서 麗末에 이르렀다.

- 1) 二十五史 唐書, 百官志 및 通志, 職官, 門下省
- 2) 三國史記 卷39, 志第8, 職官
- 3) 增補文獻備考 卷221, 職官考8, 弘文館, 藝文館

朝鮮王朝은 儒敎主義의인 支配體制를 維持할 優秀한 文臣들을 確保하기 위하여 第4代 世宗 2年(1420) 庚子에 集賢殿을 宮中에 設置하여 古今의 經籍을 蒐聚하고 才德兼備의 優秀한 文臣들을 選拔하여 典故를 討論케 하고 王의 諮詢과 進講에 應對케 하였다. 이와 같이 設置된 集賢殿의 重要한 機能이 어떠한 過程을 밟아 弘文館에 繼承되는가를 살펴 보겠다.

篡位登極한 世祖는 文臣들의 峻論 諫諍을 王權의 維持에 妨害가 된다고 보고, 六臣事件을 契機로 文臣들의 集合體인 集賢殿을 그의 2年(1456) 丙子에 革罷하여 버렸다. 그 結果 集賢殿이 遂行하던 重要한 職務도 廢止되었다. 그러나 文臣들을 敵對視하던 世祖에게도 文風의 振興과 人材의 養成은 絶對的인 問題가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그의 5年(1459) 6월에 文臣 10名을 選拔, 閑官으로 任命하여 學問에 專念하도록 措置하였고⁴⁾ 成均館과 四部學堂(서울의 中·東·南·西)의 文臣 중에서도 講經이나 製述 등의 實力이 優秀한 者에게는 會試(覆試)에 直接 應試할 수 있는 特典을 附與하게 되었다.⁵⁾ 또한 보다 積極的인 施策으로서 그의 8年(1462) 5月에는 「兼藝文館職」의 制度를 施行하기에 이르렀다. 「兼藝文館職」의 制度는 優秀한 文官들을 選拔하여 그들에게 藝文館職을 兼하게 하여 經書를 講論하고 詩賦를 짓게 하는 등 學問에 專念케 하는 것이다. 이로써 藝文館도 「兼藝文館職」을 통하여 學者의 集結所이며 學問의 殿堂으로서의 舊集賢殿의 性格에 많이 接近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잠시 藝文館의 來歷을 살펴보면, 朝鮮王朝의 藝文館은 太祖元年(1392) 7월에 文武百官의 制度를 定할 때에 보이는 藝文春秋館(掌敎命 國史)에서 비롯한다. 그후 太宗元年(1401) 7월에 藝文春秋館은 藝文館과 春秋館이라는 두개의 官司로 分離되었는데, 藝文館의 職制는 大提

4) 世祖實錄 卷16(34), 5年 6月 「擇 文臣司憲持平李永根…金宗直 等 並除閑官 讀書…」

5) 世祖實錄 卷22(26), 6年 庚辰潤11月 「傳旨禮曹曰 將幸成均館 聚四部學堂儒生 或講經 或製述 其中優等者 直赴會試」

學·提學·直提學·直館·奉教·待教·檢閱 등이며, 그 중 直館 以上은 詞命의 制撰을 맡은 知製敎로서의 職任이 주된 것이었으나 그들의 知製敎로서의 機能은 集賢殿이 存在하던 때에는 集賢殿官들이 모두 知製敎로서의 資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機能이 發揮될 수 없었으며 藝文館員은 閑官에 不過했었다.⁶⁾

그러나 이렇게 有耶無耶의 存在이던 藝文館은 集賢殿이 廢止되면서부터 事情이 달라졌다. 集賢殿이 廢止되자 그 藏書들은 藝文館에 移管됐으며, 또한 前述한바와 같이 世祖 8년에는 「兼藝文館職」이 設置됨으로써 藝文館은 舊集賢殿의 性格에 接近해 갔고, 藝文館의 이러한 質的인 變化에 따라 制度上의 變革도 招來되었다. 즉 成宗元年(1470) 4月에는 當初의 藝文館의 職制에다 舊集賢殿의 職制——副提學, 直提學, 典翰, 應敎, 副應敎, 校理, 副敎理, 修撰, 副修撰 등을 併設함으로써 舊集賢殿의 機能들도 併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成宗 9年(1478) 正月에는 새로 登第한 年少聰敏한 文官들로 하여금 學術機關에 從事할 機會를 넓혀주기 위하여 舊集賢殿制에 의거한 參外官들을 藝文館에 併設키로 決定하였고⁷⁾ 이에 따라 同年 2月에 參外官으로 博士(正 7品), 著作(正 8品) 正字(正 9品)를 增置하게 되었다.⁸⁾ 이리하여 副提學으로부터 正字에 이르는 舊集賢殿職制가 藝文館에 併設됨으로써 成宗 9年 2月的 藝文館은 二元制의 官司 즉 集賢殿의 職制와 從來의 藝文館의 職制의 完全한 複合體가 된 것이다.

한편 弘文館이 처음으로 設置된 것은 世祖 9年(1463) 11月이었다. 이 때에 同知中樞府事 梁誠之의 建議에 따라 宮中の 藏書를 舊東宮의 小室

6) 世宗實錄 卷83(9) 20年 戊午 11月 「…上曰 藝文館閑官 卿雖有疾 可以調理 毋有辭職之意」

7) 成宗實錄 卷88(21), 9年 戊戌 正月 「姜希孟 又啓曰…請依世宗朝 集賢殿例 於藝文館 併設參外官 擇年少輩充差 從之」

8) 成宗實錄 卷89(23), 9年 戊戌 2月 「吏曹啓曰…請於本館 加設參外官…擇年少有學者 充差…命如所啓」

에 收藏하여 이곳을 弘文館이라고 稱하였다.⁹⁾ 이때의 弘文館의 職制는 大提學 1名 提學 1名 直提學 1名 直館 1名 博士 1名 著作 1名 正字 2名 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他官職에 있는 者가 兼任하였다.¹⁰⁾ 大提學·提學·直提學 등은 判書·承旨 등의 重臣들이 兼하였지만, 實務官인 博士 以下는 모두 藝文館의 奉敎·待敎·檢閱 등이 兼하고 있었으므로 當時의 弘文館은 名目上 獨立된 官司이었으나 實質的으로는 藝文館에 의하여 運營된 것이었다.

이와같이 藏書機關으로서 設置된 弘文館은 前述한 成宗元年 4月の 藝文館의 機構擴張에 따라 藝文館이 文翰·經筵·記注 등의 일을 管掌케 되어 集賢殿의 古例에 따르게 되자 그 藏書들을 藝文館의 藏書閣에 移管시키게 되었다. 이리하여 世祖 9년에 藏書內閣으로서 設置된 藝文館은 成宗元년에 이르러 그 機能을 喪失하여 有名無實한 存在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藝文館에 吸收繼承되어 있던 舊集賢殿의 機能이 漸次 發展強化하여 이것이 弘文館에 繼承되어 가는데, 그 過程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藝文館內的 舊集賢殿의 職制인 副提學 以上 正字에 이르는 全官員은 春秋職도 兼하지만 經筵(侍講)과 論事를 主任務로 한데 反하여 藝文館參外官인 奉敎 以下는 經筵職을 兼하지 못하고¹¹⁾ 君臣의 言事와 事件을 記錄하는 史官으로서의 職務가 主가 되었다. 같은 藝文館參外官이지만 集賢殿職制에 의거한 博士(正7品), 著作(正8品), 正字(正9品)와 從來의 藝文館의 奉敎(正7品), 待敎(正8品), 檢閱(正9品)은 그 職銜이 다를뿐 아니라 그 職務도 完全히 區分되어 있었다. 그리고 從來의 藝文館은 數的으로나 職品, 職階에 있어서 副提學 以下의 舊集賢殿의 職制에 壓倒되어, 從來의 藝文館參外官들은 그들의 職務가 輕視 當하는 것

9) 訥齋集 卷2, 奏議 請建弘文館及同書卷5, 雜書 및 弘文館志 建置第1, 沿革

10) 世祖實錄 卷31(26), 9年 癸未 11月 弘文館志 職官第2, 差除

11) 成宗實錄卷 90(3), 9年 戊戌 3月 「傳旨吏曹曰 藝文館既設參外官奉敎以下勿兼經筵職」

같이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主客이 顛倒되어 他官司에 寄寓하고 있는 것 같이 되어버렸다. 事勢가 이에 이르자 藝文館奉教 崔乙斗 등은 從來의 藝文館參外官들에게 따로 獨立된 機關을 設置하여 줄 것을 上疏하기에 이르렀다.¹²⁾

이에 따라 藝文館分館의 必要性이 認定되어 成宗 9年(1478) 3월에 舊集賢殿의 職制인 副提學 以下 正字에 이르는 各員은 弘文館職銜(實職)으로 發令하고 從來의 藝文館參外官인 奉教 以下 8名은 藝文館에 남게 되었다.¹³⁾ 또 同 10年(1479) 己亥에는 藝文館을 弘文館으로 改稱하고, 옛날의 書筵廳에다 따로 藝文館을 設置하여 오직 辭命의 職務만을 管掌케 하였다.¹⁴⁾

이리하여 世祖 9년에 藏書機關으로 設置되었다가 成宗初에 有名無實하게 되었던 弘文館은 이때에 이르러 藝文館으로부터 舊集賢殿의 職制와 機能을 繼承하여 名實相符한 集賢殿의 後身으로서의 弘文館으로 成長하게 되었다.

暴君 燕山은 그의 11年(1505) 乙丑에 弘文館을 廢止하고 「進讀廳」을 두어 經筵을 管掌케 함으로써 그의 處事에 대한 文臣들의 干涉을 排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中宗初에 다시 復舊되고 領事 以下の 모든 官員이 經筵과 春秋職을 兼帶케 되었다.¹⁵⁾ 그 後 弘文館은 成宗 때의 舊規대로 내려오면서 政治와 學問에 至大한 影響을 미쳤던 것이다.

正祖元年(1777) 丁酉에 奎章閣이 建立됨에 따라 弘文館藏書의 一部가 奎章閣으로 移管되었다. 그 後 高宗 31年(1894) 甲午에 經筵廳과 統合하여 이듬해에 「經筵院」이라고 改稱되었으나 다시 弘文館으로 改稱되어

12) 成宗實錄 卷90(12), 9年 戊戌 3月 「…崔乙斗上疏曰 設官分職 各當其任 不可混也…伏望殿下 參酌古典 令臣等八員 別作一局 以專其任…」

13) 成宗實錄 卷90(13), 9年 戊戌 3月 「傳旨吏曹曰 藝文館副提學 以下各員 移差弘文館實銜 奉教以下八員 仍帶藝文館…」

14) 弘文館志 建置第1, 沿革 「成宗大王…十年己亥 又大臣建白 本館改稱弘文館 而 別置藝文館於 古書筵廳 只掌辭命之事…」

15) 燃藜室記述別集 7, 弘文館

宮內府에 所屬되었다가 隆熙元年(1907)에는 奎章閣에 併合되고 말았다.

또 正祖 8年(1784) 甲辰에 應敎 李魯春에게 命하여 本館의 沿革 故事 등을 制撰케 하여 이것을 「弘文館志」라는 題名으로 刊頒하였으며 高宗 7年(1870) 庚午에 이를 重刊하였다.

弘文館職制表

正 1 品	(領事 1)=領議政	從 5 品	副校理 2
從 1 品	—	正 6 品	修撰 2
正 2 品	(大提學 1)	從 6 品	副修撰 2
從 2 品	(提學 1)	正 7 品	博士 1
正 3 品	副提學 1	從 7 品	—
正 3 品	(直提學 1)=都承旨	正 8 品	著作 1
從 3 品	典翰 1	從 8 品	—
正 4 品	應敎 1	正 9 品	正字 2
從 4 品	副應敎 1	從 9 品	—
正 5 品	校理 2		

※ ()는 兼官임!

Ⅲ. 組織과 職制

A. 弘文館의 組織

世宗 9年에 처음으로 弘文館이 設置되었을 當時에는 藝文館의 奉敎以下의 官員으로써 弘文館의 博士·著作·正字의 職을 兼任케 하였고, 다만 文臣 중 藝文館의 應敎를 兼하는 者만을 골라 經筵에 入參케 하였던 것이다. 이때에 禮曹判書 朴元亨이 大提學, 同知中樞府事 梁誠之가 提學, 都承旨 盧思愼이 直提學에 任命되었다.¹⁾ 大提學은 처음에는 藝文館에만 있어 太宗 17年(1417)에 卞季良이 그 始初였으나, 그 뒤 世宗初에 集賢殿 大提學과 世祖 9年에 弘文館大提學이 생겨 藝文館大提學과 弘文館大提學이 各各 任命되었고, 世祖 10年에 徐巨正이 兩館의 大提學을 兼하게 되면서부터 이 둘을 兼任하는 것이 原則으로 되었다.

1) 世宗實錄 卷31(27), 9年癸未 11月 丁丑

燕山君에 의하여 弘文館이 革罷되어 進讀廳이라는 無氣力한 機關으로 格下되었다가 다시 中宗元년에 復舊된 뒤에는 館員 20名은 經筵의 職任을 兼하는 同時에 春秋館의 職任도 兼하였던 것이다. 經筵의 職任을 遂行함에 있어서도 大提學은 館閣堂上²⁾, 副提學은 長官, 直提學부터 應教까지는 東壁, 校理에서 副修撰까지는 西壁, 博士 以下는 南床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提學에서 正字까지의 18名을 總稱하여 18學士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弘文館의 長은 職制上으로는 領事이나 提學 以上の 官은 모두 他官이 兼任하였기 때문에 事實上 館務의 責任者는 正 3 品인 副提學이었으므로 이를 長官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國王의 敎書를 製述하는 職責을 高麗時代에는 「知製誥」라 하고 朝鮮時代에는 「知製敎」라 稱하였는데, 弘文館의 副提學 以下 副修撰 以上の 官員이 이것을 兼任하였다. 弘文館을 中心으로 한 關係諸官司의 兼帶關係를 좀더 살펴보면, 「經筵」의 正 4 品 侍講官은 弘文館의 直提學~副應敎가, 正 5 品 侍讀官은 弘文館의 校理·副敎理가, 正 6 品 檢討官은 弘文館의 修撰·副修撰이, 그 以下の 司經·說經·典經은 弘文館의 博士·著作·正字가 各各 兼任하였다. 또한 藝文館의 高級官職도 弘文館의 主要官職에 있는 사람이 이를 兼任하였던바, 藝文館의 應敎는 弘文館의 直提學~校理 중에서 選拔하여 兼任시켰던 것이다.³⁾

한편 春秋館의 編修官·記注官·記事官은 議政府의 舍人·檢詳·弘文館의 提學~正字 등이 各己 그 品階에 따라 兼任하였다. 이에서 볼 수 있듯이 「經筵」과 春秋館은 獨立된 官司이긴 하였으나 그 官員은 모두 他司의 官員이 兼任하였으며, 그 중에도 특히 弘文館이 그 主要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었다.

弘文館에는 18學士 외에도 檢校와 特進官이라는 이를테면 「非常任職」

2) 館閣은 弘文館 奎章閣 藝文館 春秋館의 通稱임, 弘文館志 職官第2, 差除

3) 文獻備考 職官考8, 弘文館

이 있었다. 檢校는 弘文館의 副提學이나 典翰을 歷任한 前職官員 중에서 任命되는데, 이는 本館의 上級官員에 準한 役割을 擔當하며 그 定員은 없다. 經筵 때에는 文官·蔭官⁴⁾ 및 武官 2品 以上인 者로써 弘文館의 副提學이 推薦(抄啓)하여 特進官을 任命한다. 이 밖에 孝宗때부터는 經筵時에 草野에 있는 高名한 文臣 중에서 經筵官을 任命하기도 하였다.⁵⁾

以上에서 提學에서 正字에 이르는 18學士와 檢校 特進官 經筵官등에 關하여 略述하였거니와, 이들 중 18學士는 主로 著述, 知製敎, 經筵 등의 任務를 擔當하였으며, 藏書의 整理 및 出納 등 本館內部的 事務處理는 弘文館에 屬한 下級官吏(吏屬)들에게 맡겨졌었다. 이들 중 重要한 職種으로는 檢書官이 있다. 이들은 奎章閣의 前職檢書官 중에서 2名을 王의 裁可를 얻어 本館에서 任用한다. 이들은 祝詩·祭文·節日帖 등을 王에게 進呈하는데 附隨되는 事務와 敎書의 正書 등을 管掌한다. 이 밖에 本館에는 寫字官, 書房色司鑰 등이 있었고 「率屬」⁶⁾으로서 書吏, 書寫, 粧册諸員 外에 各種 勞務職이 있었다.

B. 館員의 任命節次

弘文館官員의 銓衡人選은 文科及第者 중에서 弘文錄·都堂錄의 節次를 거쳐야 하며 그것은 圈點法에 의하여 行하여지는 것이다.

圈點은 原則的으로 3年마다 1次씩 行한다. 그러나 官員 中 缺員이 많아 館務遂行에 支障이 있을 때에는 3年이라는 年限에 拘碍받지 않고 王에게 그 事實을 陳達한 後에 新任官員의 銓衡人選을 行하는 것이다. 다음에, 圈點의 對象이 될 수 있는 것은 文科及第者이거나 他文官職에 이미 任用되어 있는 優秀한 人士이며, 이때에는 喪故나 其他의 事由로 免職된 者는 圈點에 應할 수 있는 資格이 附與되나, 奪告身⁷⁾ 以上の 罪를

4) 蔭官은 科擧에 의하지 않고 父祖의 功勞에 의하여 특별히 採用된 官員. 大典會通卷之1, 吏典, 京官職

5) 弘文館志 職官 第2 差除 附學屬

6) 上揭書

7) 犯罪있는 官員의 辭令書를 褫奪하는 것. 大典會通卷之2, 吏典, 京官職告身

犯한 일이 있는 者는 對象에서 除外되는 것이다.

圈點에 參加하는 銓衡官들의 定員은 4名 以上이며, 대개 長官(副提學)과 東壁(直提學~副應教) 중 1名, 校理와 修撰이 各各 1名씩 빠짐없이 參席하여야 한다. 다른 官員이 아무리 있더라도 長官과 東壁이 參加하지 못하면 圈點은 行할 수 없는바, 이것은 대개 東壁의 主張을 들어 長官이 最終決定을 내리기 때문이다. 典翰과 應教는 모두 東壁이므로 圈點에 參加하여 銓衡官의 權限을 行使할 수 있으나, 이에 反하여 直提學은 비록 東壁의 우두머리이기는 하나 都承旨가 그 職을 兼任하기 때문에 圈點에 參席하지 못한다. 檢校도 品階는 東壁에 該當하나 銓衡會議(圈坐)에는 參席하지 못한다.

그러면 圈點의 進行過程과 節次는 어떠한가. 새로 圈點을 行함에 있어서는 于先 博士 以下の 官員이 모여 文科의 榜目에 따라 及第者의 名單을 記帳에 列書한다. 그리고 別紙에다 候補者를 抄出하여 記載한다. 銓衡官들은 本館에 모여 選任할 定員과 選任에 必要한 點數를 미리 相議하여 決定한다. 點數는 圈點에 參加하는 銓衡官數의 多少에 따라 미리 協議 決定해 두는 것이다.

銓衡會議에 있어서는, 長官 以下 銓衡官들이 圈點冊을 上番房에 갖추어 놓은 뒤에 下位者로부터 1名씩 그 房에 들어가 圈點을 行하게 되는데, 冊子에 記載된 抄選者들의 姓名 밑에 그 사람이 可하다고 생각되면 붓으로 동그라미(圓圈)를 그리는 것이다. 이것이 圈點이다. 圈點이 끝나면 銓衡官 중 下位者 1名이 長官 앞에 가서 基準點 以上을 得點한 者의 姓名 밑에 得點數를 記載한다. 그리고 別紙에다 먼저 圈點에 參席한 銓衡官들의 姓名을 쓰고 다음에 滿點者의 姓名을 쓰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正書하여 圈點冊과 함께 封하여 長官 以下 全銓衡官이 署名하고 「都堂錄」 때까지 保存한다. 이때까지의 過程과 節次가 「弘文錄」 또는 「本館錄」인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議政·贊成·參贊·吏曹의 3堂上이 第2次의 圈

點 즉 「都堂錄」의 節次를 行한다. 이것을 上奏하여 得點의 順位에 따라 校理·修撰 등에 任命하는 것이다. 그리고 官員의 任命은 原則적으로 3名의 候補者(三望)를 推薦하여 그 중에서 1名을 選任한다. 그러나 玉堂南床(博士·著作·正字)의 경우에는 薦望(推薦)할 3名의 候補者가 없을 때에는 2名 또는 1名의 候補者를 推薦하여 任命한다.⁸⁾ 以上은 校理(正5品) 以下の 官員을 選任하는 節次를 말한 것이다.

玉堂의 上位官員은 어떻게 하여 選任하는가. 當初에는 直提學 以下の 官員에 缺員이 생기면 在職年限을 헤아리지 않고 順次로 陞級하여 補任하였다. 그러나 後에는 順次로 陞級하여 補任하는 規定은 廢止되고 이들도 모두 圈點에 의하여 補任되었다.⁹⁾

弘文館의 實職官이 아닌 提學(從2品), 大提學(正2品)은 他官의 兼職이지마는 이 職責은 文學人 또는 文科出身의 羨望의 對象이었고, 그 중에도 특히 大提學은 「主文」·「典文衡」 또는 「文衡」이라고도 하여 最高의 榮譽로 알았던 것이며, 本人의 辭退 또는 罪를 지어 流配(竄謫)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대개는 終身職이 되어 비록 官位가 領議政에 오르더라도 이를 兼하는 것이었다.¹⁰⁾

또 그 後任者는 前任者가 代薦하여 嚴格한 審議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大提學을 圈點할 때에 前任의 大提學이 없으면 王은 文衡 즉 大提學을 歷任한 議政에게 史官(國史의 記草를 맡은 官員으로서 藝文館의 檢閱과 承政院의 注書 등)을 보내어 後任者의 推薦을 받는다.¹¹⁾

또 大提學에 推薦되려면 반드시 文官 중 特出한 文材之士에게 賜暇하여 學業에 專念케 하는 名譽職인 「湖堂」을 거친 者라야 한다는 慣例가 있었다. 그리하여 沈彥光은 文衡으로 推薦받았으나 湖堂을 거치지 않았다 하여 本人이 이것을 固辭했었다. 그러나 宣祖 24년에 黃廷彧이 湖堂

8) 上揭書 및 弘文館志 職官 第2, 差除

9) 大典會通卷之1, 吏典, 京官職, 弘文館

10) 續大典, 吏典, 京官職에 「議政 未拜相前 兼大提學者 仍帶」라 함.

11) 大典會通卷之1, 吏典, 京官職, 弘文館

을 거치지 않은채 文衡이 됨으로써 이러한 慣例은 깨어졌으며, 黃廷或은 湖堂을 거치지 않고 文衡이 된 最初의 例이다.¹²⁾ 이와 같은 事實은 弘文館이 學問의 殿堂으로서 얼마나 權威가 있었느냐는 實例인 것이다.

IV. 弘文館의 機能

A. 政治的·行政的 機能

弘文館의 가장 重要한 權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常參 經筵등에 入參하여 朝政을 與聞하고 王의 起居를 參候하는 일이다. 弘文館官員은 그들의 所懷를 講學이 없는 날에는 書面으로 王에게 進達할 수 있는 特權이 附與되어 있었으며 또 自己의 意見을 直接 王 앞에서 陳述할 수 있고 上疏 論列할 수 있었다. 萬若 國王이나 朝廷의 重大한 過失을 是正하기 위하여 上疏하는데도 이를 듣지 않을 경우에는 弘文館員은 臺諫(司憲府와 司諫院)과 더불어 辭職하거나 職務를 中止하는 등 強力한 權限을 行使할 수 있었던 것이다.¹³⁾

뿐만 아니라 司憲府 司諫院과 對等한 立場에서 그들과 더불어 또는 獨自的으로 官의 非違를 彈劾하고 失政의 是正을 위하여 論疏하며 그 對策을 建議할 수 있는 特權이 있었다. 그리하여 弘文館 司憲府 司諫院의 세 官司를 俗稱 三司라고 불렀던 것인데, 어떤 問題에 있어 司憲府와 司諫院의 힘만으로는 國王의 允許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弘文館의 힘을 빌어 그 主張이 貫徹되는 일이 많았으므로 三司 중에서도 弘文館의 發言權이 強力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1. 劄疏(上疏)

國事나 어떤 問題에 대한 自己의 意見을 陳述하거나 司憲府와 司諫院

12) 增補文獻備考 卷221, 職官考8, 弘文館「二十四年 黃廷或爲 大提學 舊例必以 湖堂被薦者爲文衡 沈彥光曾參文衡罔 以未曾經湖堂辭 廷或始以非湖堂爲文衡」

13) 中宗實錄·卷8(68), 4年 己巳 7月 丁巳「弘文館……若君德與朝廷得失之大者 必皆論啓 不得請則 或辭職 或空館」

의 官員에 대한 罷職 또는 遞職 등을 建議하는 경우 등 무릇 國王에게 上疏할 일이 있을 때에는, 弘文館은 原則적으로 館意로써 上疏할 수 있었고 館員의 單獨上疏(獨劄)는 例外的으로 許容되어 있었다.

上疏問題를 處理함에 있어서는 指定日時에 館員들이 本館에 會合하여 論議 決定한다. 檢校는 原則적으로 이 會合에 出席하여야 하나, 弘文館이 司諫院 및 司憲府의 兩司와 더불어 合同會議을 열어 上疏할 경우에는 檢校는 이 會議에 出席할 수 없으며, 다만 現任 副提學 以下가 參席하는 것이다. 또한 閣臣 즉 奎章閣官員 중에 弘文館職을 兼任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는 弘文館과 合同으로 上疏(聯劄)하거나 혹은 單獨으로 上疏하거나 그의 任意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副提學은 弘文館의 長官이므로 비록 閣職을 兼任하는 경우일지라도 이 會議에 參席하여야 하는 것이다.

會議를 열어 文案을 作成함에 있어 서로 意見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從多數의 原則에 따라 可決한다. 贊反同數인 경우에는 否決된 것으로 看做하여 上疏할 수 없다.

上疏文案은 參席官員 중의 最下位者가 作成하고 다음에 次下位者가 이것을 修正(中草)한 後 正書하여 王이 御覽하기에 便利하도록 句點을 朱色으로 表示한다(但 國喪 중에는 靑色으로 表示한다).²⁾

上疏文이 正書되면 長官은 上疏文의 草本을 下位官은 正本을 들고 읽어 對照하여 이를 確定한다. 長官이 出席치 않은 경우에는 次位官이 이를 代行한다. 이어 承政院의 奇別書吏를 불러내어 그를 시켜 進呈케 하였다. 그리고 疏狀에 대한 王의 下答(批答)을 들을 때에는 本館의 下位官이 承政院에 出頭하는 것이었다.³⁾ 그런데 이러한 疏狀에 대한 王의 批答은 오래 끌지 않는 것이 例이었다.

弘文館의 官職에 있는 者는 學問研究에 從事함은 勿論 國王의 顧問이

2) 弘文館志館規 第4, 劄疏附草記

3) 上揭書

라는 地位로 因하여 經國의 方略까지도 論議할 수 있었으므로, 무릇 自己의 意見을 發表하여야 할 일이 있으면 이것을 모두 陳疏할 수 있었다.

2. 請對 및 伏閣 合辭

王意를 움직이게 하는 보다 強力한 手段으로서 請對 및 伏閣 合辭가 있다. 本來 官員의 非違를 糾察하거나 王의 處事 등에 관하여 諫하는 것은 司憲府와 司諫院의 主된 任務인 것이다. 司憲府와 司諫院은 各己 職務의 範圍內에서 論奏의 責任을 다하지마는, 國家의 重大事에 관하여 기어이 國王의 뜻을 움직이려 하는 경우에는 兩司가 合議한 意見으로써 「兩司合啓」 즉 合同上疏를 하기도 하며, 때로는 弘文館까지 합하여 三司의 「合啓」에까지 가는 일도 있다. 그래도 目的을 達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合司伏閣」이라 하여 兩司 또는 三司의 官員이 일제히 閣門(便殿의 前門)에 進伏하여 國王의 聽從을 強要하는데까지 이른다. 勿論 弘文館이 他兩司와 關係없이 獨自의으로 上疏할 수 있음은 前述한바와 같다. 이러한 過程을 좀 더 具體的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請對라는 것은 時急한 事由가 있을 때 王에게 謁見할 것을 要請하는 것을 말한다. 弘文館이 兩司와 關係 없이 單獨으로 王을 謁見하여 어떤 問題에 관하여 論列코자 하는 경우에는, 官員들은 本館에 會同한 後 承政院에 나아가 王에게 謁見할 뜻을 陳達한다. 그런데 萬若에 이에 대하여 國王으로부터 入侍하지 말고 上奏코자 하는바를 文書로써 進呈하라는 下敎가 있는 경우에는 諸官員은 問安廳에 모여 草記⁴⁾로써 論列할 바를 進呈한다. 萬若 緊急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當直官員인 上下番이 請對하여 王을 謁見하고 意見을 陳疏한 後에, 다시 館外에 있는 官員들에게 그 結果를 通報하여 주는 것이다.

다음에, 三司合啓의 경우에는 우선 兩司에서 弘文館과 合同으로 王에게 陳疏하여야 할 경우 兩司 중 一司가 本館에 그 뜻을 書面으로 通報한다. 또한 弘文館의 主動으로 他兩司와 더불어 合同으로 어떤 問題에

4) 上奏文의 一種. 國譯大典地通 卷之3, 禮典, 諸科註

관하여 王을 謁見코자 하는 경우에는 本館은 兩司 중 一司의 書吏를 招致하여 이에 관한 書面을 傳達한다.

兩司가 어떤 問題에 관하여 合議上疏한데 대한 允許가 없어 이것을 꼭 貫徹하여야 하겠으나 兩司의 힘만으로 不足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本館의 協力을 얻어 함께 上疏하는데, 이것이 「合辭」이다. 이 경우에는 兩司에서 어떤 問題를 合辭로써 貫徹하여야 할 必要가 있음을 本館에 書面으로 通知하면, 本館官員은 반드시 兩司의 官員과 함께 問安廳에 모여 合同上疏함으로써 그 問題에 대한 王의 批答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王家에 重大한 過失이 있어 諫諍이나 懲討 등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三司가 合力하여 閣門에 進伏하는데, 이것을 「伏閣」이라고 한다. 이것은 王室의 過失을 匡正하기 위한 一種의 實力行使인 것이다.

그리고 兩司에서 뜻을 貫徹하고자 하는바가 重大한 事項인 경우에는 合辭의 方法 以外에도, 本館이 獨自적으로 그 問題에 관하여 疏狀을 올리거나 請對의 節次를 밟아 그 問題의 貫徹를 期하는 경우도 있었다.⁵⁾

3. 檢劾機能(處置 其他)

弘文館은 또한 司憲府와 司諫院의 官員 및 本館의 官員이 저지른 犯法行爲에 대한 處理에도 關與하는 一種의 檢劾權을 가지고 있었다. 즉 司憲府와 司諫院의 官員 중에 犯法한 嫌疑事實이 있으면 司憲府의 關係官이 이것을 處理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萬若에 이 問題를 處理하여야 할 司憲府의 關係官員이 모두 有故하거나 또는 어떤 嫌疑事件과 關聯되어 그 處理를 忌避하여야 할 경우에는 司諫院의 이 事件과 關係 없는 官員이 이 事件의 處理를 擔當하는 것이다. 그런데 司諫院의 關係官員도 모두 有故하거나 혹은 그 事件과 關聯되어 그 處理를 忌避하여야 할 立場에 있는 경우에는, 兩司의 嫌疑事件은 모두 本館에 移送된다. 이때에 本館은 이 問題를 調查하고 被疑者에 대한 處理方案(立落)을 마련하여 上疏하거나 請對하여 王의 允許를 얻는데, 이것을 「玉堂處置」라

5) 弘文館志 館規第4, 請對附伏閣 合辭

고 한다.

또한 本館은 自體의 權限에 依據하여 兩司의 依賴 없이도 直接 그것이 가진 檢劾權을 行使할 수도 있었다. 本館官員은 職責上 當然히 經筵을 兼하고 있으므로, 入侍時에 宰相 以下 모든 官員의 職務上的 過失에 대하여 그것을 糾明하여 處罰할 것을 王에게 稟請할 수 있으며(請推), 또한 玉堂 즉 本館官員은 承旨 및 閣臣과 더불어 相互 職務上的 過誤에 대하여 그것을 調査 處理할 것을 王에게 稟請할 수 있다.

4. 知製敎

弘文館의 副提學 以下 副修撰까지의 官員은 또한 知製敎의 職도 兼任한다. 知製敎라는 것은 王에게 敎書 등을 起草하여 바치는 職務를 말한다. 그런데 이 知製敎에는 두가지 種類가 있는바, 本館官員으로서 知製敎를 兼任한 것을 「內知製敎」라 하고, 또 大提學이 吏曹判書와 相議하여 6品 以上の 官員으로써 別途로 候補者를 抄錄 上奏하여 知製敎에 任命된 것을 「外知製敎」라고 稱한다. 外知製敎는 正3品 通政大夫의 品階에 이르기까지 兼任하며, 奎章閣의 直提學 以下の 官員은 現任·前任을 莫論하고 모두 外知製敎의 職을 兼任하는 것이다.⁶⁾ 무릇 時急한 敎書는 반드시 本館知製敎에게 命하여 이를 制撰케 하였다.

5. 賓 待

每月 6次씩(初5日, 10日, 15日, 20日, 25日, 末日) 定期的으로 重臣들이 入侍하여 重要的 政務에 관하여 王에게 上奏하는 것을 「賓待」라 한다. 여기에는 議政堂上·臺諫·玉堂 등이 參與하는 것이다. 이 賓待에는 弘文館의 上番 즉 直提學(後에는 典翰) 以下 副校理가 入參하는 것이 通例이나, 三司가 合同하여 論罪에 관한 文書를 上奏하는 경우에는 兩司 즉 司憲府와 司諫院의 官員이 所定人員에 達하면 本館의 諸官員도 이에 同參할 수 있었다.⁷⁾

6) 大典會通 卷之1, 吏典, 京官職

7) 大典會通 卷之3, 禮典, 朝儀 및 弘文館志 館規第4, 雜式

6. 議 諡

弘文館은 一定品階 以上이며 國家에 대하여 顯著한 功勞가 있는 臣下에게 그의 死後에 追贈하는 榮譽인 諡號를 決定하는 일에도 參與하는데 諡號의 追贈에 關하여 協議하는 것을 「議諡」라고 한다. 諡號는 原則的으로 文南武(즉 文官·蔭官·武官) 중 正2品 以上の 實職을 歷任한 者에게 追贈하는 것이다.⁸⁾ 그러나 大提學의 秩은 正2品에 準하므로 비록 從2品 大提學이었던 者라도 諡號의 下賜를 許하는 것이다.⁹⁾ 또 正2品の 官職을 갖지 못하였더라도 그의 功勞가 顯著한 臣下인 경우에는 特敎에서 그에게 諡號를 追贈할 수 있다. 즉 儒學으로 高名하였거나 또는 節義에 죽은 사람으로서 특히 有表한 者는 비록 正2品の 官職을 歷任하지 않았더라도 특히 諡號의 追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儒學으로 高名하였던 者나 節義에 죽은 者 以外에는 破格的으로 諡號를 下賜하여 주도록 請願하지 못한다.¹⁰⁾

끝으로 諡號追贈問題의 協議에 있어서는 本館의 關係官員이 奉常寺의 關係官員과 協議하여 決定하며 이렇게 決定된 諡號는 議政府의 關係官에 의한 署經(身元照會)를 거쳐 王의 裁可를 받는 것이다.¹¹⁾

B. 學術·文化的 機能

1. 進 講

弘文館員은 모두 經筵의 職을 兼하고 있었으므로 學術機關으로서의 弘文館의 機能으로는 우선 侍講을 들 수 있다. 本館은 集賢殿의 後身으로서 그 官員은 모두 「文學才行之士」들이었으며, 王의 側近에서 交代로 勤務하면서 王에게 侍講하며 道義를 規諷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弘文館은 原則的으로 常參科 經筵을 每日 主管하도록 되어 있었다. 「常

8) 弘文館志 館規第4, 議諡

9) 大典會通卷之1, 吏典, 贈諡

10) 上揭書

11) 國譯大典會通 p.128

12) 文名과 德行이 있는 官員 즉 弘文館員의 別稱의 하나. 淸宦이라고도 함. 大典會通卷之1, 吏典, 京官職

參)이라 함은 勳威公卿과 清要官¹²⁾이 國王을 參謁하는 것을 말하며 「經筵」은 國王에게 經書를 講讀하고 論評하는 것¹³⁾을 말하는데, 經筵에는 朝講·晝講·夕講 등이 있었다. 王命을 傳達하고 復命하는 일을 管掌하는 것(掌出納 王命)을 職任으로 하는 承政院은, 每日 早朝(平明)에 그 다음날의 視事(常參과 經筵의 合稱)의 有無를 王에게 稟申하여 決定한다. 國忌日이나 公休인 경우에도 承政院은 視事의 有無를 王의 뜻을 물어 定하는 것이다. 國王이 開講을 願하는 경우에는 司謁¹⁴⁾을 시켜 朝講 晝講 혹은 夕講을 열도록 承政院에 下命한다. 三時講(朝·晝·夕講)이나 兩時講을 續行코자 할 때에도 역시 同時에 下命한다. 命을 받은 承政院은 開講時間을 粉板(揭示板)에 記載하여 承政院의 大門밖에 揭示公告한다. 王이 講論을 願하지 않는 경우에도 司謁로 하여금 翌日의 講이 없음을 承政院에 傳하며, 承政院은 이 事實을 揭示한다. 王朝中葉 以來 常參은 極히 드물게 行해졌으며, 거의 廢絶되다시피 되었다. 三時講이나 兩時講도 극히 드물게 行하여졌으나 다만 晝講만은 많이 行해졌었다. 또한 定時講이 아닌 召對와 夜間講인 夜對가 가끔 있었다. 어떠한 事由로 말미암아 視事를 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시 承政院이 王의 뜻을 물어 定해야 했다. 그리고 親祭舉動前 3日間과 冊 한卷의 講論을 마친 後 7日間(이것을 溫釋間이라 함)은 講論이 없었으며, 隆寒(小寒에서 大寒까지) 盛暑(初伏에서 處暑까지)에도 講論이 없었다. 또한 비록 一旦 開講이 公告되었더라도 事情이 있으면 停講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國王이 다른 緊急한 公務를 執行해야 할 경우 등이다. 後에 이르러 別講이라는 것도 間或 있었는데 이것을 勸講 혹은 進講이라고도 稱했다. 또한 王의 幸行時나 舉動時에도 御講冊子를 隨員에게 持參시켜 경우에 따라서는 隨時로 講論을 行하는 것이었다.

2. 文臣의 勸課

13) 大典會通卷之1, 吏典, 京官職, 經筵

14) 司謁, 掖庭署의 雜職의 하나, 正6品, 大典會通卷之1, 吏典, 京官職

弘文館은 進講을 통하여 國王의 學業의 向上을 위하여 功獻하였을 뿐 아니라, 本館官員과 一般文臣들의 學業을 勸獎하기 위해서도 많은 努力을 傾注하였던 것이다.

于先 本館官員 自體의 學業의 向上을 위하여는, 本館의 모든 官員은 每月 1次 講讀試驗을 보게 되어 있었으며 堂上官이 이것을 主管하였다. 또한 40歲 未滿의 官員들에게는 月 3次 製述(詩文을 制撰하는 것)을 命하였다.¹⁵⁾ 이리하여 月末에는 그 成績을 評定하는데, 1年을 통하여 5次 1等を 한 官員에게는 그 階를 加하고 階가 다한 官員은 陞職시키는 것이었다.

다음에, 一般文臣의 勸課를 위하여는 「月課」라는 制度가 있었다. 月課에는 每年 春等·夏等·秋等·冬等の 四等이 있는데, 例를 들면 春等은 春三朔月課라고 稱한다. 月課에는 九題¹⁶⁾를 내어 抄啓文臣¹⁷⁾에게 命하여 詩文을 草하여 올리게 하는데, 이것은 選拔된 優秀한 文臣들에게 더욱 學問을 勸獎하기 위함이었다. 抄啓文臣을 選拔하는 일은 大提學과 禮曹堂上이 主管하였다.

月課의 出題는 大提學이 專擔한다. 本館에서는 各官司에 出題되었음을 알리며, 各官司에서는 本館에 와서 出題內容을 謄書하여 간다. 抄錄된 文臣이 現職者인 경우에는 該當官司에서 本人에게 알려주며, 그가 非實職者인 경우에는 軍職廳¹⁸⁾으로 하여금 그에게 알려 준다. 抄錄된 사람은 出題를 받아 이에 應하여야 하는데 出題 중 奏文¹⁹⁾만은 반드시 製呈하여야 한다. 그리고 王命을 받아 外地에 나가 있거나 비록 賜假中

15) 成宗實錄卷 269(11), 23年 壬子 9月 癸巳 「大提學洪貴達來啓曰弘文館員年過四十者勿令製述…」

16) 九題는 雜用詩文各體. 每年 各各 3題씩 製進토록 하였으므로 九題라 함. 奏文은 中國 등에 대한 外交文書. 弘文館志 館規第4, 代撰

17) 文臣 중 優秀한 者를 미리 選拔하여 月課時에 講讀과 製述의 試驗을 받게 하는데 여기에 選拔된 堂下文官, 大典會通卷之3, 禮典, 獎勵

18) 朝鮮王朝時代의 武官廳. 大典會通卷之4, 兵典, 京官職 參照

19) 奏文, 여기에서는 事大交隣에 관한 文書. 弘文館志 館規 第4, 代撰

에 있는 者라도 製述에 應하여야 한다. 製述의 成績이 優秀한 者에게는 資級이 加해지며 劣惡한 者는 경우에 따라 問責 또는 罷職되기도 한다.

3. 故事考證

進講이 없는 날에는 本館의 上下番은 王朝의 美談이나 帝王의 治績 또는 名臣 巨儒들의 奏語의 一段 혹은 數段을 正書하여 呈納하게 되어 있었다. 萬若에 이러한 古事에 관한 自己의 見解를 披瀝코자 할 때에는 別途로 一段의 文字를 作成하여 添付한다.

朝廷에 典禮(吉凶의 儀式)와 儀章(儀式의 表章)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에 관한 節次를 반드시 考究하게 되어 있었다. 王의 命을 받아 玉堂은 널리 經史를 考證하여 王에게 上奏하는데, 이때에 該當官員은 考證한바를 騰書하여 承政院을 經由 王에게 進達하는 것이다.

C. 圖書館의 機能

世祖 9년에 同知中樞府事 梁誠之의 建議에 따라 弘文館이 비로소 設置된 때에는 그것은 하나의 藏書機關에 不過한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圖書館의 性格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後 許多한 迂餘曲折을 겪으면서도 대체로 圖書館으로서의 性格을 堅持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弘文館이 오늘날의 圖書館과 同一한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現代의 圖書館과는 달리 弘文館은 學術文化를 위한 機能과 強力한 政治的 權限을 保有하면서 同時에 圖書館的 性格도 併有하던 複合的 이고도 多樣한 機能들을 가진 妙味 있는 官司였다.

1. 藏 書

a. 藏書의 來歷

弘文館의 藏書는 本館의 東쪽에 있던 2 層建物인 「登瀛閣」에 收藏되어 있으며, 同所藏書冊에는 每卷의 第1張 第1行의 上段에 「弘文館」이라는 朱印을 捺印하였는데, 그 印文의 字體는 「八分」(漢나라의 蔡邕이 隸書 二分과 篆書 八分을 組合하여 創案한 字體)의 體로 되어 있었다. 從來各

宮과 各官司에 散在해 있던 歷代의 經籍諸書는 原則的으로 弘文館에 收藏하도록 되었는데, 이것은 前述한바와 같이 世祖때 梁誠之의 建議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다.

그 後 弘文館에는 傳來되어 있던 圖書 以外에도 많은 圖書들이 새로 蒐集 收藏되어 藏書의 數가 크게 增加하였다고 推測된다. 그러나 壬辰倭亂 丙子胡亂 등의 戰火로 因하여 不幸히도 藏書의 大部分이 燒失되었다. 亂後에는 各地에 散在한 書籍들을 收集하는 한편 中國으로부터도 書籍을 購入해 왔으며, 또 校書館(奎章閣의 外閣)에서 印出되는 書籍들을 收藏하고 各道에 通牒하여 冊板을 調査시켜 必要한 것은 印出 上送케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弘文館의 努力도 다시 丙子胡亂으로 打撃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能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弘文館의 藏書는 大部分 仁祖 以後(亂後)에 蒐集 所藏된 것이다.²⁰⁾

正祖初에 奎章閣이 建立됨에 따라 藏書의 一部는 奎章閣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弘文館에서는 繼續 圖書를 蒐集하여 書庫인 登瀛閣에 이들 書籍을 收藏하였던 것이다.

隆熙元年(1907)에 弘文館은 奎章閣에 併合되었으며, 弘文館의 數 많은 藏書들은 現在 文化財管理局藏書閣에 收藏되어 있는 一部를 除外하고는 「奎章閣圖書」로서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에 傳來되어 있다.

b. 書籍의 蒐集과 複製

書籍의 蒐集은 外國貿易에 의한 購入 寫本製作·納本 등의 方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圖書蒐集은 弘文館만의 努力이 아니고 舉國의 안 協力を 얻어 施行되었다.

첫째 書籍의 購入에 있어서는 事前에 그 冊의 所藏與否와 國內에서의 求得可能與否를 調査한다. 國內에서 購入할 수 없을 때에는 戶曹에 부탁하여 中國에 使臣의 往來가 있을 때 購入해 오도록 한다.

21) 仁祖實錄卷20, 7年己巳「玉堂啓曰 本館書籍再經變亂 散失無錄些少收拾者 卷帙不備 自今每於使臣 燕京出行 購來書冊之 切要者宜矣 上從之」

둘째는 寫本製作인데, 王의 下命에 의하는 경우와 本館에서 王의 裁可를 얻어 寫本을 製作하는 경우가 있다. 寫本을 製作함에는 筆致가 能熟한 寫書官이 板下本과 같이 楷書體로 正書하는 것이다. 이렇게 製作된 寫本の 1部는 大內에 納入하고 1部는 本館의 藏書로서 整理된다.

納本은 法으로 定해져 있었다. 즉 校書館이나 京中各司에서 印出되는 모든 書籍은 반드시 弘文館에 1部씩 納本토록 되어 있었다. 또한 京外 各處에서 公的 또는 私적으로 刊行되는 書籍들도 印出納本케 하였다.

이 밖에도 各道에 通牒하여 各監營과 郡縣에 어떠한 書籍과 冊板을 所藏하고 있는지를 調査 報告케 하는 한편 그 完全한 것은 각 1件씩 印出 納本토록 하였던 것이다.

2. 編纂 및 刊行圖書

弘文館은 前述한바와 같이 可能的 限 國內外的 必要的 書籍들을 모두 蒐集 收藏하였다. 그리고 世祖 9年(1463)에 처음으로 設置되어 隆熙元年(1907)에 奎章閣에 併合될 때까지 400餘年間이나 存續했던 弘文館은 必要的 書籍들을 編纂 혹은 刊行하였으리라는 것은 그것의 性格과 機能으로 보아 쉽게 짐작된다. 그러나 弘文館에서 編纂 혹은 刊行된 圖書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綜合的인 刊行書目이 없어 그 全體的인 것은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東亞文化研究所出版), 國會圖書館發行「韓國古書綜合目錄」,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所藏「李朝歷代王政史」(著者·發行年度 等 未詳) 등에 나타나 있는 것을 추려본 바 그 內譯은 圖表와 같다.

弘文館刊行圖書目錄

書目	冊數	出版年代	備考
經國大典			
東國輿地勝覽			
東國通鑑			
東文選	4冊		
登瀛錄	1冊		寫本
文任先生案	1冊		
文衡錄	1冊		
副提學先生案	1冊		寫本
新補受教輯錄受命編	2卷2冊	英祖19年(1743)	
樂章軌範			
瀛選考	1冊		
沃溝縣巨沙里浦收稅節目	1冊		寫本
玉堂先生案	3冊		
陸律分韻奉教彙編	39卷13冊		活字本
典翰先生案	1冊		寫本
增補文獻備考	250卷 首卷付合51冊	隆熙年(1907)	新活字本
增補文獻備考正誤	1冊		
進講冊子次第	1冊		寫本
春秋四傳錄	56卷55冊		
褒貶臚錄			寫本
湖堂先生案	4冊		
弘文館書目誌			
弘文館誌			
訓諭都鑑臚錄	1冊		寫本

D. 其他職任 및 特典

1. 當直勤務(豹直)

弘文館官員은 輪番制로 一定期間 晝夜 繼續 勤務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豹直」이라고 한다. 이러한 晝夜勤務에는 直提學 以下(後에는 直提學이 都承旨를 兼任하게 되었으므로 典翰 以下) 副校理까지를 上番으로 하고 修撰 以下 正字까지를 下番으로 하여 輪番制로 臨하였다. 특

히 新任官은 任官과 同時에 누구나 例外없이 長期間 晝夜 繼續해서 勤務하여야 하며, 이 定해진 勤務日數를 「做度」라고 한다. 그런데 上番官員의 做度は 20日間, 下番官員은 30日間이었다. 이 做度法은 甚히 嚴格 하였으며, 做度가 끝난 官員은 다음부터는 做度보다 勤務 日數가 짧은 輪番制의 晝夜勤務 즉 「輪直」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3日間으로 規定되어 있었다.

2. 進 箋

正朝(1月1日)·冬至·聖節(帝王의 誕辰日)·千秋節(王世子의 誕辰日)에는 國王이 王世子 以下를 거느리고 望闕禮(中國을 向하여 皇帝에게 拜禮하는 것)를 舉行하며, 또 正朝·冬至·朔望과 國王 및 王妃의 誕辰日에는 王世子와 百官이 國王과 王妃에게 賀禮(朝賀)한다. (그러나 朔望에는 大殿 즉 國王에게만 朝賀한다.) 또 每年 正朝나 冬至에는 文武百官을 위한 會禮宴을 舉行하는 것이었다.²³⁾

이러한 諸儀式 및 其他 國家의 慶事에는 祝賀의 箋文(國家의 吉凶事)가 있을 때 奉進하는 四字 또는 六字의 對句로 된 漢文體인 四六體의 글)을 奉進하는 것이 例이었다. 이때에 弘文館은 內閣(奎章閣)과 一體가 되어 箋文을 奉進하는데, 여기에는 現任 및 前任 副提學 以下의 官員이 進參하며 提學 以上은 進參하지 않는다.

3. 儀式參與·特典 其他

玉堂官員은 이 밖에 諸般儀式에도 參與한다. 玉堂은 經筵에 入參함이 本來의 職任이므로 다만 經筵이나 賓對에 限하여 入侍하는 것이 原則이었으나, 高宗元年(1864) 甲子 3월에 내린 特敎로써 朝廷의 大事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入侍하게 된 것이다.²⁴⁾

또한 每年 國王 및 王妃의 誕辰日과 正朝·冬至 및 무릇 國家의 慶事나 宴會가 있는 때에는 現任 및 前任 弘文館官員도 모두 閣門에 進詣하

23) 大典會通卷之3, 禮典, 宴享, 朝儀

24) 弘文館志 館規第4, 起居附參班

여 問安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國王이 城外에 動駕하거나 宗廟의 四孟月(正·4·7·10月) 上旬과 臘日(冬至後 第3의 戌日)의 祭享 및 永寧殿(宗廟內的 別殿)의 春秋孟月(1·7月) 上旬의 祭祀 및 社稷의 春秋仲月(2·8月)의 上戌日과 臘日의 祭享 등 大祭에 親行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國王과 王妃에게 다같이 問安을 드린다.

이 밖에 玉堂에게는 여러가지 特典이 附與되어 있었다. 闕內에서 勤務할 때各司의 官員과는 달리 玉堂은 內閣의 官員과 더불어 戴冠의 特典이 附與되어 있었고, 休暇旅行時에는 驛馬와 驛夫도 支給되었으며 또한 弘文館에는 充分한 數의 奴婢를 賜給하여 使役케 하였다.²⁵⁾ 그 밖에 玉堂에게는 現任·前任을 莫論하고 喪禮 등에 있어서도 相當한 禮遇가 베풀어졌었다.²⁶⁾

V. 結 論

이 小論은 朝鮮王朝時代에 있어서 多樣하고 複合的인 機能들을 가졌던 官司인 弘文館의 面貌를 可能한 限 그 實體에 가깝도록 再現시켜 보려고 試圖한 것이다. 그리하여 「弘文館志」를 中心으로 여러 參考文獻과 資料들을 涉獵하면서 이에 관한 記錄들을 抄出 整理하여 體系化시켜 보았다.

弘文館이라는 名稱의 官司는 中國에 있어서는 일찌기 唐·宋時代에 그 淵源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文翰之任」의 官司는 三國時代에 始作되었고 이것이 高麗에 繼承되어 朝鮮王朝時代에 이르러 그것이 弘文館으로서 開花를 보게 된 것이다. 弘文館은 그 前身이라고 할 수 있는 集賢殿이 世祖 2년에 革罷된 後, 同王 9년에 藏書內閣 즉

25) 成宗實錄卷214(2), 19年戊申 3月丙寅...左承旨韓堰啓曰 弘文館奴婢不足 雖賜宴 不能自辦...傳曰 令諸司 辦設且刑曹推刷遺漏 奴婢 其加給 弘文館

26) 弘文館志 館規第4, 雜式

王室圖書館으로서 設置되었으며, 成宗代에 이르러 藝文館으로부터 舊集賢殿의 機能을 吸收 繼承하여 政治的 變革과 戰火 속에서도 꾸준히 그 存立을 維持하면서 隆熙元年(1907)에 奎章閣에 併合될 때까지 400餘年間이나 存續하여 왔던 것이다.

弘文館의 性格을 간단히 定義하면 「掌內府經籍·治文翰·備顧問」의 官司로서, 學術·文化·政治的인 機能들을 가진 官司이었다.

弘文館은 첫째 文治主義를 國是로 하였던 朝鮮王朝에 있어서 하나의 文化的 基盤으로서 國內外的 經籍들을 蒐集 收藏하는 一種의 王室圖書館이었다. 許多한 迂餘曲折을 겪으면서도 風磨雨洗한 많은 古圖書들이 奎章閣圖書로 移管되어 現在까지 傳來되어 있다는 嚴然한 事實은 무엇 보다는도 弘文館이 一種의 圖書館의 機能의 官司였다는 不動의 證據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에, 設置 當初는 一種의 王室圖書館에 不過하였던 弘文館이 後에 이르러 舊集賢殿의 機能을 吸收 繼承함으로써 學術의 研究와 發展에 크게 寄與하게 되었다. 學術機關으로서의 弘文館은 經筵進講을 通하여 國王을 學問的으로 補弼함으로써 王道政治를 實現시키고자 努力하였고 玉堂官員 自體의 學業向上을 위하여는 賜暇讀書의 制度 등을 實施하였으며, 一般 文臣들의 學業勸獎을 위하여는 月課를 行하였다.

그리고 王의 諮問機關으로서의 弘文館은 常參 召對 夜對 등에 入侍하여 王의 側近에서 朝政의 得失을 論陳하였으며, 國政이나 王의 處事가 正軌를 離脫하였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劄疏 請對 伏閣 合辭 등의 節次를 밟아 臺諫과 더불어 혹은 獨自的으로 地位와 목숨을 걸고 那야말로 「踏斧鉞而不辭」의 氣概로써 失政의 匡正을 위해 努力하였다. 또한 諸官員에 대한 檢劾機關으로서 非違犯法官員들을 糾察하였다. 이러한 王의 諮問機關 乃至 諸官員에 대한 檢劾機關으로서의 弘文館의 機能은 마치 三權分立制下에서의 牽制와 均衡의 原理를 彷彿케 하는바가 있어 國王의 失策이나 官員의 脫線을 抑制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었다.

弘文館은 現代의 어떠한 政治的 機關이나 文化的機關에서도 그 類似性을 찾아 볼 수 없는 多樣하고 複合的인 機能을 가진 官司로서, 그 官員들은 本館職外에 모두 王에게 進講하는 「經筵」의 職을 兼任할 뿐 아니라 副提學 以下 副修撰까지는 王의 敎書를 製進하는 「知製敎」를 兼任하였다. 또한 領事·大提學·提學 등 上級官職은 他官이 이를 兼帶하며, 이밖에 弘文館員은 또한 藝文館·春秋館 등의 職을 兼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兼職制度는 一見 複雜하고 非合理的인 것 같으나 弘文館의 多樣하고 複合的인 機能에 適合한 妙味있는 制度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弘文館이 現代國家의 公務員銓衡制度에 못지 않게 官員의 任命에 있어 徹底한 實力主義의 原則에 立脚하여 情實人事의 排除에 努力한 點, 一部 例外는 있었으나 歷代 國王들이 그들에게 言官으로서의 諫言을 躊躇하지 않았던 玉堂을 성가신 存在로 보지 않고 이러한 言官의 所言을 聽從하는 것을 君主의 重要한 德目으로 생각하여 弘文館을 積極育成하였던 點 등은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要컨데 弘文館은 朝鮮王朝時代에 있어서 하나의 重要한 官司로서 政治 學術 文化 등 多方面에 至大한 影響을 미쳤으며 그 業績은 길이 빛나고 있을뿐 아니라, 그 精神的·文化的 遺産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有形 無形으로 連綿히 繼承되어 있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經國大典 法制處 1963
 高麗史(上中下) 鄭麟趾 撰 서울, 延世大學校東方研究所編 4288(1955)
 故事通 崔南善編 三中堂, 1943
 國譯大典會通 韓國古典國譯委員會編 서울, 高麗大學校 出版部 1960
 群書標記(全) 新韓書林(1970)
 宮闕志(서울史料叢書第三)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刊 1957
 奎章閣考 金龍德著 中央大論文集 2, 1957(p. 223~238)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서울大學校文理科大學附設 東亞文化研究所編 1965
 奎章閣史 白麟編 圖書館報卷2 p. 6~28

- 奎章閣에 對하여 李成茂著 文理大學報(서울) 12, 1958, p. 116~125
- 訥齋集(六卷三冊) 梁誠之著 正祖 15年(1791) 卷
- 大典會通 中樞院編 1939
- 大典續錄及註解 中樞院版 昭和10年(1935)
- 都城圖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所藏
- 讀書堂考 金岸基著 震檀學報(17輯) 서울, 乙酉文化社 1955 p. 3~30
- 三國史記 金富軾著(高麗) 英祖 36年(1760)
- 三國遺事(增補3版) 崔南善編 서울, 民衆書館 1958
- 庶孽禁錮始末(東方學志第一輯) 李相佰著 서울, 延世大學校 1954, p. 159~329
- 雅亭遺稿卷3 檢書廳記 李德懋著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奎章閣圖書(1796)
- 燃黎室記述別集七, 李肯翊著(純祖朝) 19卷 21冊
- 慵齋叢話 卷2 集賢殿 成俱著 年紀未詳
- 王宮史 李哲源著 東國文化史 4287(1954)
- 二十五史唐書志 開明書鑄版民國23(1934), p. 191
- 李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서울, 東國文化社 1963
- 李朝歷代王政史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所藏(311768), 菊版 3759
-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文化財管理局藏書閣 1972
- 朝鮮常識制度編 崔南善著 서울, 東明社 1948
- 朝鮮語辭典 朝鮮總督府編 서울, 大正 9年(1920)
- 增補文獻備考(卷之二百二十一)(影印) 東國文化社編 1971
- 韓國古書綜合目錄 國會圖書館編 1968
- 韓國官僚制度의 史的考察(2) 俞尙根著 明大論文集(三輯) 1969 p. 14~19
——李朝時代의 官僚制度——
- 韓國圖書館史研究 白麟編 서울, 圖書館協會 1969
- 韓國史(近世前期編) 震檀學會編 서울, 乙酉文化社 1959
- 弘文館書目 奎章閣編 隆熙 2年(1908) 108張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所藏(11711)
- 弘文館의 成立經緯 崔承熙著(韓國史研究 5) 1970, p. 97~111
- 弘文館志 李魯春等編 正祖 8年(1784) 1冊39張
- 弘文館志 李魯春等編 高宗 7年(170) 1冊58張
- 弘文館冊書目 弘文館編 光武 10年(1906) 32張, 藏書閣所藏

A Study on the Hongmunkwan(弘文館)

by Yong-joon Pak

The study is to trace the origin of the Hongmunkwan and discuss its development and roles assigned in each succeeding stages of the history.

The Hongmunkwan lived a long life through Koryo and Yi dynasties. It was a multi-functioned institution designed as a royal library, an educational institution, and a political reference center. Prior to the Hongmunkwan, there were some established institution with similar functions to its ones during the Three-Kingdom Era. One of such kind was the Sungmunkwan(崇文館), which was eventually renamed the Hongmunkwan by King Songjong(成宗) of Koryo in 995, and a distinguished scholar-minister was appointed at the position of directorship for management of the now status-raised institution where state documents and books were housed.

The Hongmunkwan experienced some reforms during its long life. In 1420, King Sejong(世宗) of Yi Dynasty founded the Jipyōnjōn(集賢殿) within the royal palace in place of the Hongmunkwan. The Jipyōnjōn was an innovated Hongmunkwan where many scriptures were stored and distinguished scholars and officials studied on them, sometimes delivering lectures to the king.

King Sejo(世祖) abolished the Jipyōnjōn in his second year(1456) and reestablished the Hongmunkwan designed as a royal library

in place of the former in his ninth year. King Songjong(成宗) in his 10th year (1479) of the reign, reformed the Yemunkwan(藝文館), which exis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Yi dynasty, by extending its functions and afterwards absorbed it into the Hongmunkwan together with the functions of the former Jibhyōnjon which were included in the Yemunkwan. He founded another Yemunkwan which had the roles of drafings and descriptions of royal decrees.

In the 10th year (1504) of Yonsankun(燕山君), the Hongmunkwan was abolished and instead of it the Jindokchōng(進續廳) was founded with less authority and functions. But shortly after that, King Jungjong(中宗) refounded the Hongmunkwan with the same scale, same authority and same functions as the former one.

As the Hongmunkwan also had a function of the royal library it collected and kept numerous books and writings in it. Some books and writings of the Hongmunkwan were composed of those which had been transmitted from the Koryo Dynasty and the others were composed of those which had been collected in the country or purchased by the trade with China in the Yi dynasty. Also newly-compiled important books in the country were reprinted and one of them were send to the Hongmunkwan.

In the 8th year (1784) of King Jongjo(正祖), the history of the Hongmunkwan, entitled the Hongmunkwanji(弘文館志), was written and editioned by the royal decree and it was reeditioned the 7th year (1870) of King Kojong(高宗). The Hongmunkwan was absorbed into the Kyujanggak(奎章閣) in 1907.